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3. 9. 4.(월) 11:00 이후(9. 5.(화) 조간) / 배포 : 2023. 9. 4.(월)

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찾습니다

- 9월 5일 공모 공고·지자체 설명회… 합리적 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5일부터 **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**하여 **지역의 거점을 조성**하는 **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**의 공모를 **공고**하고, **지자체 공모 설명회***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(시/소) 2023.9.5.(화) 14:00 / 국토연구원(세종)

○ **기존 기업도시**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·개발하는 사업으로 '04년에 도입하여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,

○ 면적기준 등 **과도한 개발규제**와 도시·건축 **규제특례 부족**, 시행자·**입주기업 지원 부족**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였다.

□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**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**하여, 기업이 원하는 개발·투자가 가능토록 **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**와 다방면의 **지원을 확대**할 예정이다. (☞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)

○ 또한,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**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**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**지자체 설명회**에 참석하여 안내받거나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
□ **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**은 **"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**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, **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**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"며,

○ "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**지역거점 조성전략**이자 **국정과제**로 추진되는 만큼,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**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**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수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하 (044-201-4731)
			주무관	이은정 (044-201-3698)

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계획 주요 내용

□ **[대상]**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**광역시장·시장·군수(기업 포함)**

*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도권은 제외

□ **[일정] :** 공모서 접수(11.6~11.10.), 평가(11~12월), 최종 선정(12월)

□ **[신청요건] :**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

○ (면적) 비도시지역 50만㎡ 이상(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㎡),
도시지역 10만㎡ 이상,
공장·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㎡ 이상

* 신청요건(최소면적 기준)은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개정중인 사항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내용은 기업도시법 및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

□ **[평가] :**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**평가위원회**에서 서면심사, **현장실사, 종합평가**를 거쳐 최종 2곳 이상 선정

□ **[지표] :**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

평가분야		평가기준
I	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(20점)	가. 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(8점)
		나. 정부, 지자체 정책·사업 연계 활용성 및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(5점)
		다. 주변지역 정주·생활환경, 기반시설 및 도시서비스 확보·지원 가능성 (7점)
II	기업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(25점)	가. 기업의 사업역량 및 기존 실적, 중장기적 발전·투자계획 (7점)
		나. 기업의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적합성 및 직접 사용 계획의 신뢰·타당성 (10점)
		다. 기업의 거버넌스적 역할·추진역량과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(8점)
III	투자 및 사업수요, 지원 적정성 (20점)	가.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투자 및 사업성 확보방안, 사업참여 형태의 적정성 (8점)
		나. 입주기업 유치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리·운영 적정성 (7점)
		다. 입주기업·기관과 정주·근로자 지원방안 및 정부재정 지원 적합성 (5점)
IV	지자체의 행·재정적 사업지원 역량과 의지 (25점)	가. 입주기업 유치·육성과 개발·관리·운영에 있어 지자체 역할과 기여 (10점)
		나. 인허가, 갈등관리 등 사업추진단계별 행·재정적 협조·지원방안 (8점)
		다.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,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의 적합성 (7점)
V	균형발전 기여 및 지역 특성 부합성 (10점)	가. 시도별 균형발전 지표(*균형위, '22 발표*) 및 개선 가능성 (4점)
		나. 지역경제 파급효과, 정주·생활인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 (3점)
		다. 지역·산업생태계 형성·확장 적합성 및 지역 발전·혁신에의 기여 (3점)

붙임 2 **기업혁신파크 사업 개요**

□ 기업도시

○ (**도입배경**) **민간기업 주도 투자·개발**하는 도시로서, 행복·혁신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('04,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정)

○ (**현황**) 법 제정 이후 **6개 시범사업**을 선정('05)하여 개발구역 지정, **2개 준공**(충주·원주)·**2개 개발중**(태안·영암해남)·**2개 지정해제**(무주·무안)

○ (**지원혜택**) **시행자 및 입주기업**에 대해 △**세제지원**(법인세 및 재산·취득세 등), △**임대료 감면**, △토지수용권 등 **인센티브**

대 상	내 용
사업시행자	▲개발면적 50%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, ▲주진입도로 설치비 50%지원, ▲법인세감면(3년 50%, 2년 25%), ▲건폐율·용적률 특례(국토계획법의 1.5배)
입주기업	▲신설·창업기업 법인세감면(3년 100%, 2년 50%) ▲국·공유지 임대료 20%감면

○ (**개발 절차**)

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	→	**구역·시행자 지정 계획승인**	→	**실시계획 승인신청**	→	**계획승인**	→	**시행**
민간기업 지자체		국토부		사업시행자		국토부		시행자

□ 기업혁신파크 (기업도시 2.0)

○ (**제도개선**) 지역거점에 신속한 도심·고밀 개발을 위해, **면적규제 완화** 및 **개발절차 간소화**, **도시·건축규제 인센티브 강화** 등

* ▲(면적 완화) 최소면적 축소(100만㎡→50만㎡),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 허용(10만㎡), ▲(절차간소화) 통합계획·통합심의 도입, ▲(도시·건축규제 완화)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
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개정 절차를 통해 **제도개선 동시 추진 중

○ (**선도사업**)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확산을 위해 **연내 선도사업**을 **선정**하고, 전문기관에 **타당성 검토**를 의뢰하여 **사업컨설팅 지원**

*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지 2개소 이상 선정